○ 양 천 구 의 회
○ 제289회 임 시 회

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전문위원 신훈

2021. 10. 14.

복지건설위원회

의 안 검 토 보 고

의안번호	제2661호	검토	전문위원 신훈
의안명	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제출자	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	제출일자	2021. 9. 27.
소관위원회	복지건설위원회	회부일자	2021. 9. 28.

1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.

2 주요내용

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대행자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, 조례로 위임된 예외의 경우를 정함.

3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의5

-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3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.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(2021. 8. 19. ~ 2021. 9. 8.) 결과 : 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3) 부패영향 평가 결과 : 원안동의.

4) 성별영향 평가서 결과 : 원안동의.

4 검토의견

□ **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**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신설된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, 조례로 위임된 예외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**조문별 검토**

○ 안 제7조의2제1항은 개정된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함)을 적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대행자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.

- 참고로,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음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16조의3제2항

1. **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·운영**할 것

가.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**후방영상장치**

나.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**안전멈춤바** 및 **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**

2. **안전화, 안전조끼,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**할 것

3.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. 다만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가. **주간작업을 원칙**으로 할 것

나. **3명(운전자를 포함한다)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**으로 할 것

다. 폭염·강추위, 폭우·폭설, 강풍,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**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**를 할 것

○ 안 제7조의2제2항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근거하여 안전기준 등(① 주간작업 원칙, ② 3명 1조 작업 원칙)에 대한 예외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.

- ① 쓰레기 소각장은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시 ~ 13시까지 운영 중에 있음. 이 때문에 주간작업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단서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,
- ② 환경부의 <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>에 따라 안전기준 3명이 1조로 작업하기에 과하다고 판단되는 작업들을 예외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.
- 참고로, 3명 1조 작업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2명이 작업하던 환경에서 1명 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함. 이에 따라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(2019.1.1. ~ 2021.12.31.)이 종료되는 시점인 내년부터는 대행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
【표 1】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 조문 대비표(안 제7조의2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7조의2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대행자는 규칙 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주간작업 예외 경우 가. 소각·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를 감안할 때 주간작업이 어려운 경우 나. 출근시간대 도로혼잡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.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. 3명 1조의 작업 예외 경우 가. 골목길 손수레 및 적재중량이 1.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.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, 노면청소 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. 가로청소 작업 및 민원 처리가 필요한 경우 라.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소각·매립 등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.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 환경, 폐기물의 종류, 차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□ 종합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의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, 상위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전기준 및 예외사항을 적용할 때,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【붙임 1】 관련 법령

「폐기물관리법」

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(이하 이 조에서 “안전기준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안전기준,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

제16조의3(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(이하 “안전기준”이라 한다)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
2.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**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**

1.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
가.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
나.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
2. 안전화, 안전조끼,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
3. **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. 다만,**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**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**
가. **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**
나. **3명(운전자를 포함한다)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**
다. **폭염ㆍ강추위, 폭우ㆍ폭설, 강풍,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**